2015년 6월 22일 법률 개정 내용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37페이지 상-2줄 : 수정

▶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7페이지 37번 문제 : 보기 ③, ④ 수정

▶ ③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④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4페이지 하-11줄 : ㅅ 수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7페이지 하-8줄, 11줄 : ㉑, ㉔ 수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3페이지 하-15줄 : ㉮ 수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73페이지 상-7줄 : 끝에 추가

▶ 다만,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3페이지 상-18줄 아래 : (9), (10), (11) 추가

▶ (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

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2015.6.22 신설)

(10) (9)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1)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15.6.22 신설)

(1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2015.6.22 신설)

174페이지 하-4줄 : 수정

▶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75페이지 상-2줄 : 추가

▶ 취소 →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83페이지 상-7줄 : ② 교체

▶ ② 제23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9페이지 하-15줄 위 : ④의3 추가

▶ **④의3** 제3조 제11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2015.6.22 신설)

199페이지 하-1줄 위 : ⑨의2 추가

▶ **⑨의2** 제1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2015.6.22 신설)

203페이지 하-7줄 위 : (7) 추가

▶ (7) 제3조 제10항에 따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2015.6.22 신설)

206페이지 하-7줄 위 : ㉣ 추가

▶ ㉣ 제3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2015.6.22 신설)

228페이지 하-12줄 위 : (2) 추가

▶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도 불구하고 제3조 제11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2015.6.22 신설)

228페이지 하-12줄 : (2) → (3)
228페이지 하-10줄 : (3) 위 (2)에 → (4) 위 (3)에
229페이지 상-1줄 : (4) 위 (2)에 → (5) 위 (3)에
229페이지 상-2줄 : (5) 시·도지사는 위 (2)에 → (6) 시·도지사는 위 (3)에

229페이지 상-4줄 아래 : (7) 추가

▶ (7) 위 (3)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2015.6.22 신설)

①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②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③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④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29페이지 상-5줄 : (6) → (8)

231페이지 상-10줄 위 : 참고 :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추가

▶ 참고 : 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법 제40조의4 : 2015.6.22 신설)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 ①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위 ①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③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37페이지 하-6줄 : 수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9페이지 상-1줄 : 수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페이지 하-12줄 끝에 : 추가

▶ 다만, 1대사업자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2015.6.22 개정)

240페이지 하-2줄 : 수정

▶ (2) 운송사업자 → (2)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

241페이지 하-6줄 : 19. 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법** 제47조의3) (1), (2) 삭제

246페이지 하-13줄 : 수정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60페이지 상-11줄 아래 : (3)의2 추가(개정 8판 1쇄 기준)

▶ (3)의2 제1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2015.6.22 신설)

260페이지 맨 아래 : (3)의2 추가(개정 8판 2쇄 기준)

▶ (3)의2 제1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2015.6.22 신설)

262페이지 상-18줄 아래 : ⑱의3 추가(개정 8판 1쇄 기준)

▶ ⑱의3 : 제40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2015.6.22 신설)

263페이지 상-2줄 아래 : ⑱의3 추가(개정 8판 2쇄 기준)

▶ ⑱의3 : 제40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2015.6.22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60페이지 상-18줄 아래 : 14. 추가

▶ 14. **과밀부담금의 면제**(법 제42조의3)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6.22 신설)